

의 안 번 호	제530호
의 결 연 월 일	. . . (제 회)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3월 5일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30
----------	-----

발의연월일 : 2024년 3월 5일

발 의 자 : 이의영, 박경숙, 김꽃임, 김국기,
이양섭, 이종갑, 임병운

1. 제안이유

-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의 사업내용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북도의 학령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등 지역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함
- 또한, 장학생 선발 규정을 신설하고 진흥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및 승인 기간을 단축하는 등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진흥원의 사업 내용(안 제4조)
- 장학생의 선발(안 제4조의2)
- 사업계획 승인 등(안 제12조)
- 진흥원에 대한 제재(안 제15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붙임
- 조례안예고 : 2024. 3.
- 협 의 : 충청북도 과학인재국 RISE추진과
- 비용추계 : 붙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영지원하는데”를 “운영 지원하는 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민법」 중”을 “「민법」 중”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역 우수 인재 발굴·양성 사업
 - 가. 충북인재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 나.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및 도민 자녀 장학사업
 - 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사업
 - 라. 과학·문화 등 영재교육 지원사업
 - 마. 충북인재양성 정보화 시스템 구축
2.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와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연구·조사·컨설팅
 - 나.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
 - 다. 문해교육센터 운영
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장학생의 선발) ① 진흥원은 장학생 선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

② 진흥원은 장학생 선발 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내 시·군에서 출연한 장학재단의 장학금 중복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③ 장학생의 신청·선발 등을 위한 세부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2조 중 “2개월”을 “1개월”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다음연도 2월말”을 “다음 연도 2월 말”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지도감독)”을 “(지도·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진흥원운영”을 “진흥원 운영”으로, “지도감독”을 “지도·감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거짓 보고”를 “거짓 보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승인없”을 “승인 없”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진흥원 운영 등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우수 인재 발굴·양성 및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u>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u> 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u>운영</u>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운영</u> <u>지원하는 데</u> ----- -----.
제3조(등기) ① (생략) ② 진흥원의 등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등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민법」 중</u> ----- -----.
제4조(사업) <u>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u> 1. <u>충북인재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u> 2. <u>충북도민 및 도민자녀 장학사업</u> 3. <u>과학·문화 등 영재교육 지원사업</u> 4. <u>충북인재양성 정보화 시스템 구축</u> 5. 「 <u>평생교육법</u> 」 제20조제2항에 <u>서</u> 정한 업무 6. <u>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연구·조사·컨설팅</u>	제4조(사업) <u>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u> 1. <u>지역 우수 인재 발굴·양성 사업</u> <u>가. 충북인재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u> <u>나.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및 도민 자녀 장학사업</u> <u>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사업</u> <u>라. 과학·문화 등 영재교육 지원사업</u> <u>마. 충북인재양성 정보화 시스템</u>

현행	개정안
<u>7.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u> <u>8. 문해교육센터 운영</u> <u>9.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사업</u> <u>10.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u> <u><신 설></u>	<u>템 구축</u> <u>2.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 서 정한 업무와 다음 각 목의 사 업</u> <u>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연구·조사·컨설팅</u> <u>나.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역 량 강화 지원</u> <u>다. 문해교육센터 운영</u> <u>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사업</u> <u>4.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u> <u>제4조의2(장학생의 선발) ① 진흥원 은 장학생 선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u> <u>② 진흥원은 장학생 선발 시 충청 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내 시·군에서 출연한 장학재단의 장 학금 중복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u> <u>③ 장학생의 신청·선발 등을 위 한 세부 기준은 따로 정한다.</u>
제6조(조직 및 운영) ① ~ ③ (생략)	제6조(조직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④ -----

현행	개정안
한다)는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u>소속공무원을</u> 파견하거나 겸임토록 할 수 있다.	----- <u>소속 공무원</u> ----- -----.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1조(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u>의한다</u> .	제11조(회계연도) ----- ----- <u>따른다</u> .
제12조(사업계획 승인 등)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u>2개월</u>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사업계획 승인 등) ----- ----- ----- <u>1개월</u> ----- ----- -----.
제13조(결산서 제출 등) ①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u>다음연도 2월말</u> 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서 제출 등) ① ----- ----- ----- <u>다음 연도 2월</u> <u>말</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u>지도감독</u>) ① 도지사는 <u>진흥원운영</u> 과 관련하여 진흥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u>지도감독</u> 을 할 수 있다.	제14조(<u>지도·감독</u>) ① ----- <u>진흥원</u> <u>운영</u> ----- ----- ----- <u>지도·감독</u> ----- -----.
② 도지사는 <u>제1항</u> 규정에 의한 <u>지도감독</u>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② ----- <u>제1항에 따른 지도·</u> <u>감독</u> ----- -----

현행	개정안
수 있다. 제15조(진흥원에 대한 제재) 도지사는 진흥원이 다음 <u>각호</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사업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u>거짓보고</u>를 하였을 때 3. 도지사의 <u>승인</u>없이 사업계획을 변경 실시하였을 때 <u><신설></u>	--. 제15조(진흥원에 대한 제재) ----- ----- <u>각호</u>----- ----- ----- ----- -----. 1. (현행과 같음) 2. ----- <u>거짓 보고</u>----- 3. ----- <u>승인</u> 없----- ----- 4. <u>그 밖에 진흥원 운영 등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u>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평생교육법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3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 국가 및 시·군·구 간 협력·연계

6.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해외 인재 유치·양성을 통해 충청북도의 학령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등 지역문제를 해결

2. 비용발생 요인

- 해외 인재 유치·양성 지원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4조(사업)

4. 비용추계 결과

- 재정수반요인 : 해외 인재 유치 및 양성을 위한 소요 예산
- 추 계 전 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 계 결 과 : 12억 7천5백만 원
 -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원 : 750백만 원
 - 외국인 유학생 유치 교육지원 : 525백만 원
- 재원조달방안 :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금

5.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출	255,000	255,000	255,000	255,000	255,000	1,275,000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급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외국인 유학생 교육지원	105,000	105,000	105,000	105,000	105,000	525,000
재원 조달	255,000	255,000	255,000	255,000	255,000	1,275,000
기 금	255,000	255,000	255,000	255,000	255,000	1,275,000